

인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공람·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·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,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8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2. 1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위 치 : 서구 오류동 58번지 일원
2. 면 적 : 34,830㎡
3. 입안사유 :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구역지정과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
4. 결정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농림지역	34,830	감) 34,830	-	100.0	
자연녹지지역	-	증) 34,830	34,830	100.0	

○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: 공람장소에 비치

5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